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43호
- 나. 발 의 자 : 강 수 정 의원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안 제5조~제6조)
- 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안 제7조)
- 마. 용역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의무화(안 제12조)
- 바. 용역과제심의 업무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 11. 15.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6조 : 위원회의 임기
○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4조 : 심의대상	○ 제8조 : 위원장 등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 회의 ○ 제10조 : 심의요청 등 ○ 제11조 : 용역결과 관리 ○ 제12조 : 용역결과의 공개 ○ 제13조 : 의견청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 회의결과 보고 ○ 제15조 : 비밀누설금지 ○ 제16조 : 수당 등 ○ 제17조 : 시행규칙
---	---

참고로 우리구의 5년간 용역계약 현황은 표2와 같음.

표2 용역계약 현황

(단위 : 건)

연번	연 도	합 계	금 액 별 기 준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계		878	566	95	38	34	145
1	2015년	330	272	16	4	2	36
2	2016년	115	63	14	6	9	23
3	2017년	129	68	25	4	5	27
4	2018년	145	75	22	11	6	31
5	2019년	159	88	18	13	12	28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카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¹⁾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라. 검토결과

본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사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의 참여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나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 락 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